

광주지방법원 2017. 2. 14 선고 2016가단215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 2017. 1. 24.

판결 선고 2017. 2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별지 부동산표시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(다)부분

3㎡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주택의 처마를 철거하고,

나. 별지 부동산표시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㉣, ㉡, ㉣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4㎡ 지상

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고,

다.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한윤옥

별지